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0. 2.

환 경 부
환경산업경제과(녹색산업혁신TF)

목 차

I. 제안의 일반사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 2. 입찰 관련사항 1

II. 제안요청 내역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 2. 과업의 개요 2
- 3. 과업의 내용 2
- 4. 행정사항 3
- 5. 성과품 제출 6

III. 제안서 작성요령 등

-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7
- 2. 과업제안서 평가 8
- 3. 입찰 관련서식 D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연구
- 나. 용역내용 : "II. 제안 요청내역" 참조
-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5개월
- 라. 기초가격 : 80,000천원(부가세 포함)
- 마.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II. 제안요청내역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인 녹색경제 전환 기조에 따라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녹색금융 역할 강조**
 - 국제기구, 선진국 중심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및 제도화 추진 중
- 국내에서는 금융기관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녹색투자가 진행 중인 바,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의 녹색금융 투자 확대 유도 필요
 -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한 공식적인 녹색금융 분류체계(안) 마련 추진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1500-1531-303-260-01(환경산업수출기반 일반연구비)

3. 과업의 내용

① 녹색금융 분류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 분석

- EU 등 국제기구 및 해외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금융 개념 및 분류 기준(Taxonomy)에 따른 녹색경제 활동 분류체계 현황 분석
-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 대상 선정 기준 관련 사례 분석
- 그 외 국내외 녹색경제 활동의 범위·분류 등에 대한 규정, 기준, 사례 등과 녹색경제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녹색기술·산업 동향 분석

②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 국내외 기준·사례 등을 고려하여 녹색금융 대상 녹색경제 활동 분류체계 마련(대-중-소-세분류-세세분류)
- 세세분류 기준으로 세부 정의서(해설서) 마련

③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통한 녹색산업 분류체계 도출

- 개발된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녹색산업 현황 도출
- 도출된 녹색산업 현황에 대해 환경산업특수분류와 비교·검토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 제안

4]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 녹색경제활동 구분, 분류체계 설계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연구포럼 구성·운영(4회 이상)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연구원편성표 및 연구경력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
 - 연구비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

나. 과업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20일 이전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간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매월 등)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완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라.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마. 보안 등 기타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 하는데 협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예산비목 변경시,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짐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계약 양쪽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40부(요약본 포함) 및 보고서가 수록된 CD 2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한글로 작성, A4 50쪽 내외)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방향, 방법, 수행체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참여연구원 및 이력사항(특히 책임연구원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 사업 추진 일정
 - 연구비 소요 명세표(비목별 연구비 세부 산정 내역 제시)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과업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총 점		100
기술 능력	1. 사업수행계획	45
	①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의 이해정도 - 과업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15
	②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③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참여 전문인력	20
	①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구성원의 연구실적	10
	②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10
	3. 관련(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15
입찰 가격	평점산식 : 아래	20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지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협상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
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3. 입찰 관련서식 : 붙임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붙임 2)

본 사업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W)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p> <p>붙임 서류: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right;">20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귀하</p>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5)

입찰서

입찰 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명			
	금액	금	원정(W)
	준공(납품)년월일			
입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0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환경부장관귀하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인)

○○○(인)

(붙임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